

의안번호	2209659
의 퇴 인	민병덕의원
회 답 일	2025.6.24.
추계번호	25D2166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, 6·3항쟁 사망자, 부상자, 공로자 등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, 직업훈련 및 진료 지원 등을 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억 8,600만원(연평균 5,73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	
생활조정수당	31	32	32	33	34	162	32.4	
직업훈련	0.7	0.8	0.9	0.9	1	4	0.9	
진료	보훈병원	21	23	24	25	27	120	24.0
	위탁병원	0.7	0.7	0.7	0.8	0.8	4	0.7
합계	53	56	57	59	62	286	57.3	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	6·3항쟁사망자, 6·3항쟁부상자, 6·3항쟁공로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,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음	의무규정
2	안 제22조(교육지원 대상자 등)	6·3항쟁부상자, 6·3항쟁 공로자 및 6·3항쟁사망자의 배우자, 자녀 등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	재량규정
3	안 제38조(직업훈련)	6·3항쟁부상자, 6·3항쟁 공로자 및 6·3항쟁사망자의 배우자, 자녀 등을 직업훈련 지원 대상에 포함	재량규정
4	안 제42조(진료)	6·3항쟁부상자를 국가 의료시설(보훈병원 포함)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진료지원 대상에 포함(제1항) 6·3항쟁부상자를 위탁의료시설 진료 지원대상에 포함하고,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	의무규정
5	안 제43조의2(보철구의 지급)	6·3항쟁부상자를 보철구 지급 대상에 포함	의무규정
6	안 제44조(의학적 재활 등)	6·3항쟁부상자를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 지원대상에 포함	의무규정
7	안 제63조(양로지원)	6·3항쟁부상자를 국가 양로시설 지원대상에 포함	재량규정
8	안 제66조(수송시설의 이용지원)	6·3항쟁부상자를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에 포함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	○	법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경우, 생활 조정수당 지급대상이 되어, 추가재정소요 발생
2	안 제22조 (교육지원 대상자 등)	×	6·3항쟁 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교육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
3	안 제38조 (직업훈련)	○	—
4	안 제42조 (진료)	○	—
5	안 제43조의2 (보철구의 지급)	×	보철구 지급 추가 대상자는 6·3항쟁부상자 9명이 며, 보철구 지급 대상이 되는 유공자 중 보철구 지급자는 4.4%로 추가재정소요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
6	안 제44조 (의학적 재활 등)	×	의학적 재활 지원 추가 대상자는 6·3항쟁부상자 9 명으로, 추가재정소요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
7	안 제63조 (양로지원)	×	양로지원 시설로 보훈원을 운영(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 위탁 운영)하고 있으며 입소인원과 상관없이 매년 양로지원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추가 입소한다고 하여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
8	안 제66조 (수송시설의 이용지원)	×	수송시설 이용지원의 추가 대상자는 6·3항쟁부상 자 9명으로, 추가재정소요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 어 추계대상에서 제외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6·3항쟁사망자, 6·3항쟁부상자, 6·3항쟁공로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, 법 제14조(생활조정수당) 지급 대상이 되어 추가재정소요 발생
- 또한, 개정안에 따라 6·3항쟁부상자 등에 대해 교육, 직업훈련, 진료, 보철구 지급, 의학적 재활, 양로지원, 수송시설 이용 등을 지원할 경우,

추가재정소요 발생

- 다만, 교육지원의 경우, 6·3항쟁 관련 유공자 본인의 연령 및 자녀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대상에 제외
 - － 2012.7.1.이후 등록한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음
 - 양로지원의 경우, 양로지원 시설로 보훈원을 운영(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운영)하고 있으며 입소인원과 상관없이 매년 양로지원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6·3항쟁 관련 유공자 및 유족이 추가 입소한다고 하여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
 - 보철구지급, 의학적 재활과 수송지원의 경우, 추가 대상자는 6·3항쟁부상자 9명으로, 추가재정소요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
-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, 6·3항쟁 관련자 현황

- 6·3항쟁 관련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건수는 84명임

[표 2] 6·3항쟁 관련 민주화운동 관련자 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사망	부상	명예회복	합계
6·3항쟁 관련자	2	9	73	84

자료: 행정안전부

나. 생활조정수당

-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
- 국가보훈부는 2025년 현재 가구원수를 3명 이하 및 4명 이상인 경우

로 구분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% 이하, 40% 이하, 50% 이하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음

[표 3] 생활조정수당 가구원수별, 소득수준별 월지급액

(단위: 천원)

가구원수	소득기준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 증가율
3명 이하	50% 이하	220	220	220	242	242	2.4
	40% 이하	252	252	252	277	277	2.4
	32% 이하	283	283	283	311	311	2.4
4명 이상	50% 이하	273	273	273	300	300	2.4
	40% 이하	305	305	305	336	336	2.4
	32% 이하	336	336	336	370	370	2.4

주: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, 가구당 가계지출비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을,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을 의미

자료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5]를 참고하여 제작성

- (월 지급단가) 2025년 생활조정수당 예산 평균단가 30만 6,000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평균 2.4%를 적용하여 지급단가를 추정

[표 4] 생활조정수당 월 지급단가: 2027~2031년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월 지급단가	321	329	337	345	35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지원대상) 6·3항쟁 관련 유공자의 가구원수 및 소득수준 자료의 부재로, 6·8항쟁 관련 유공자 84명에 80세 이상 국가유공자 11만 7,019명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인원 1만 1,775명으로 생활조정수당 수급비율 10.1%을 적용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은 8명으로 산정함
- (추가재정소요) 생활조정수당 월 지급단가에 지급대상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5]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대상자(명)	8	8	8	8	8
월지급단가(천원)	321	329	337	345	353
추가재정소요(백만원)	31	32	32	33	3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직업훈련

- 개정안 제38조에 따라 6·3항쟁부상자, 6·3항쟁 공로자 및 6·3항쟁사망자의 배우자, 자녀 등을 직업훈련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
-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직업훈련을 위해 취업능력개발비로 취업수강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을 지급
 - 다만,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의 경우, 5·18민주유공자 유가족 지원현황을 고려할 때, 추가재정소요가 미미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 - 취업수강료는 5·18민주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취업수강료 지원비율 및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함

[표 6] 5·18민주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취업수강료 지원인원 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평균
지원인원	102	97	74	38	30	68.2

자료: 국가보훈부

- (지원대상)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대비 유가족 비율 3.9배를 적용하여 6·3항쟁 유공자 유가족을 328명¹⁾으로 산정하고, 5·18민주유공자 지원비율 0.6%를 적용하여 지원대상인원은 1.9명으로 추정
 - 5·18민주유공자 지원 대상자 11,648명 중 최근 5년간 장려금 지원인원은 68.2명으로 지원비율은 0.6%임
- (지원단가) 5·18민주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2024년 지원단가에 최근 5년간 지원단가 연평균증가율 8.8%를 적용하여 지원단가 추정

1) 6·3항쟁 본인 연령은 최소 80세로 지원대상 인원에서 제외함

[표 7] 5·18민주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취업수강료 지원단가 현황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증가율
지원단가	0.213	0.228	0.264	0.267	0.298	8.8

자료: 국가보훈부

[표 8] 6·3항쟁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취업수강료 지원단가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연평균증가율
지원단가	0.315	0.333	0.352	0.372	0.393	8.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추가재정소요) 지원단가에 지원대상을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9] 직업훈련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지원대상(명)	1.9	1.9	1.9	1.9	1.9
지원단가(백만원)	0.384	0.418	0.455	0.495	0.539
추가재정소요(백만원)	0.7	0.8	0.9	0.9	1.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진료(보훈병원)

- 개정안에 따라 6·3항쟁부상자를 국가 의료시설(보훈병원 포함) 및 지방 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진료지원 대상에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
- 보훈병원 진료지원의 경우,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6·3항쟁 관련 유공자 역시 부상자 본인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며 명예회복자 및 유가족은 진료비의 60%를 감면하는 것으로 가정
- (지원대상) 보훈병원 전액감면 대상자는 부상자 9명이며, 60% 감면 대상은 157명으로 추정
 - 60% 감면대상은 명예회복자 73명과 배우자 82명(부상자 9명+명예회복자 73명), 사망자의 선순위유족 2명을 합하여 157명으로 추정
- (수진횟수 및 진료단가) 수진횟수는 최근 5년간 수진횟수 평균을, 진료

단가는 2024년 단가에 최근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

[표 10] 최근 5년간 보훈병원 진료단가 현황

(단위: 원, %)

구분	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증가율
진료 단가	전액지원	102,089	107,592	112,573	123,292	130,381	6.3
	감면	62,974	64,394	66,795	67,249	74,035	4.1

자료: 국가보훈부

[표 11] 최근 5년간 보훈병원 수진횟수 현황

(단위: 회)

구분		2020	2021	2022	2023	2024	평균
수진 횟수	전액지원	10.7	10.5	9.9	10.2	9.9	10.2
	감면	0.6	0.6	0.6	0.6	0.6	0.6

자료: 국가보훈부

[표 12] 보훈병원 진료단가 및 수진횟수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원, 회, %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연평균증가율
진료 단가	전액지원	147,259	156,242	165,773	175,885	186,614	6.1%
	감면	79,417	83,944	88,729	93,787	99,133	5.7%
수진 횟수	전액지원	10.6	10.6	10.6	10.6	10.6	-
	감면	0.6	0.6	0.6	0.6	0.6	-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추가재정소요) 대상자 수에 수진횟수, 진료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 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13] 보훈병원 진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전액지원	14	15	16	17	18	80
감면	7	8	8	8	9	40
합계	21	23	24	25	27	1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마. 진료(위탁병원)

□ 개정안에 따라 6·3항쟁부상자를 위탁의료시설 진료 지원대상에 포함하

고,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 발생

- (지원대상) 위탁병원 진료지원 대상자는 6·3항쟁부상자 9명임
- (수진횟수 및 진료단가) 수진횟수는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진횟수를, 진료단가는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최근 5년간 평균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²⁾을 적용하여 산정

[표 14]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위탁병원 수진횟수 현황

(단위: 회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평균
수진횟수	1.5	1.4	1.4	1.5	1.9	1.5

자료: 국가보훈부

[표 15]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위탁병원 진료단가 현황

(단위: 원, %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평균
진료단가	47,835	50,938	54,589	53,406	46,229	50,599

자료: 국가보훈부

[표 16] 위탁병원 진료단가 및 수진횟수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원, 회, %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연평균증가율
수진횟수	1.5	1.5	1.5	1.5	1.5	—
진료단가	52,644	53,696	54,770	55,866	56,983	2.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추가재정소요) 대상자 수에 수진횟수, 진료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17] 위탁병원 진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추가재정소요	0.7	0.7	0.7	0.8	0.8	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5.4.)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6년 이후 2.0%임

바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, 6·3항쟁 사망자, 부상자, 공로자 등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, 직업훈련 및 진료 지원 등을 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억 8,600만원(연평균 5,73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8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생활조정수당		31	32	32	33	34	162	32.4
직업훈련		0.7	0.8	0.9	0.9	1	4	0.9
진료	보훈병원	21	23	24	25	27	120	24.0
	위탁병원	0.7	0.7	0.7	0.8	0.8	4	0.7
합계		53	56	57	59	62	286	57.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